

울산신용보증재단 공고 제2024-03호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울주군 위탁사업) 채용 공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간제 근로자(울주군 위탁사업)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 기간제 근로자(울주군 위탁사업) 채용

1. 공모직위

- 기간제 근로자 1명

2. 계약기간

- 약 6개월(2024. 04. 01. ~ 2024. 9. 30.)

3. 채용분야

-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등 업무보조

※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4. 근무지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울산광역시 내)

5. 자격요건

가. 연령·성별·신체조건 제한 없음

나.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현역은 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다. 재단 「인사규정」제14조 제1항(채용제한)에 전부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별지] 결격사유 참고

6.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가점 부여. 단, 해당 법률 제3항에 의거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세 부 내 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근로조건

급 여	복리후생	근무시간
매월 2,350,000원 (중식대 및 교통비 포함)	4대 보험, 복지포인트 등 내규에 의거 지급	주 5일 근무 (평일 8시간 : 9시 ~ 18시)

8.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전 형	실시일자	평가기준	선발배수	합격자 발표일자	
서류전형 (온라인)	'24. 2. 27(화) ~ 3. 8(금) (14시까지)	결격사유 여부 판단	-	'24. 3. 12(화) 17시 이후	
면접전형 (오프라인)	'24. 3. 19(화) 14시 예정	아래의 항목을 면접위원이 평가 후 산술평균한 점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	1명 (예비합격자 2명 선정)	'24. 3. 20(목) 17시 이후	
		구 분			배 점
		기본자질 및 핵심가치			20점
		전문분야지식			3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창의력·기타발전가능성	30점				
신원조회 이상 여부 및 최종합격자 발표				'24. 3. 25(월) 17시 이후	

9. 전형별 채용일정

구 분	세 부 일 정
공고기간	2024. 2 26(월) ~ 2024. 3. 8(금)
접수일자	2024. 2. 27(화) ~ 2024. 3. 8(금), 14:00까지
서류전형	2024. 3. 12(화) 한
서류전형 발표	2024. 3. 13(수), 17시
면접일자	2024. 3. 19(화), 14시
신원조회 확인	2024. 3. 22(금) 한
합격자 발표	2024. 3. 25(월), 17시
출근일자	2024. 4. 1(월)

※ 세부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접수방법

- 재단 채용 홈페이지(recruit.incruit.com/ulsanshinbo)를 통한 온라인 접수

11.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마감일 기준(마감일 : 2024. 3. 8)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에 한함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공개로 발급하여 사본 제출

제출서류 목록	유효기간	비고
1.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공통
2. 경력증명서(경력사항 확인용)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3개월 이내	
4.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자격요건 확인용)	-	
5.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6. 가족관계증명서(결격사유 확인용)	3개월 이내	
7. 국가건강검진 결과서(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11.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가. 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
나. 최종합격자 발표 시 최종합격 예비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하면 차순위자로 입사 기회 부여

12. 동점자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시험 평가항목 “기본자질 및 핵심가치”, “전문분야지식”, “창의력, 기타 발전가능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순으로 고득점자로 결정

13.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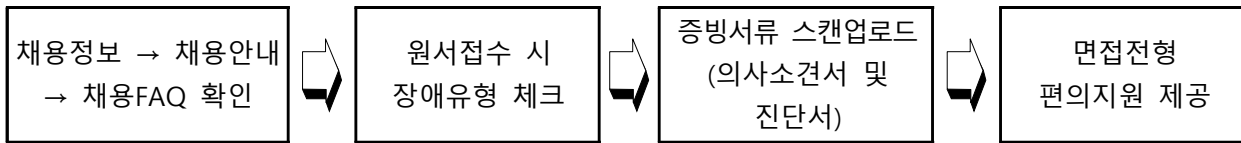
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최종 합격 시 증빙
나. 허위사실 기재 및 채용비리 사실 확인 즉시 ‘탈락’ 처리 후, 민·형사상 조치 예정
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학력 등 작성 금지

14. 지원자 권리 보호제도 안내

가.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 제공범위 : 면접전형

■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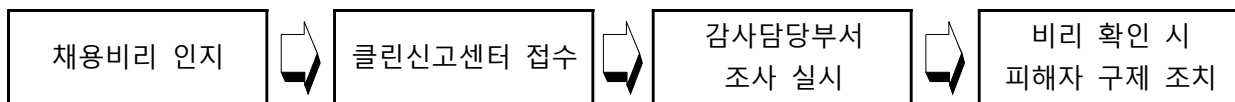


나. 이의 제기 절차

■ 근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청구방법 :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로그인 후 작성 후 제출

■ 처리절차



■ 피해자 구제방법

피해자 특정 가능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단계로 채용시 기회 부여
피해자 특정 불가	피해자 그룹 대상으로 피해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 채용 절차 실시

15. 기타사항

가. 응시자의 부적합 사유 또는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중 서류전형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미준수자는 보완 요청없이 탈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가 허위내용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분 및 추후 입사 불가

라.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전형별 결과는 기재한 휴대 전화번호로 개별 통지(문자발송 등) 예정

바. 기타사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본부(담당자 추화랑 차장, 052-283-8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 가. 당 재단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함.
- 나.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봄
-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당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 재단이 부담
- 라. 당 재단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간 채용서류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

1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안내사항

- 가. 면접시험 당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 영상 면접으로 응시 기회 부여
※서류합격 발표 후 비대면 영상 면접 응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나. 면접시험 지원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 당일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를 실시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심 증상 있으면 응시 제한
※37.5℃ 이상의 발열 및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울 산 신 용 보 증 재 단

○ 결격사유

구 분	세 부 내 용
<p>재단 「인사규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의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